

1. 개정이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전기차 주차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 항목 추가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 개선(별지 제1호의4·제6호·제17호 서식)

- 1) 최근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주차대수 등 기재항목이 추가되면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도록 신청서식을 수정함
- 2)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등기촉탁 신청기한이 1개월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 상에 안내문구를 수정함

나. 건축 인허가 시 협회 의무가입 확인(별지 제1호·제1호의4·제4호·제6호·제13호·제17호·제22호의2·제22호의5·제23호·제24호)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협회 가입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서식에 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다.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개선(별지 제23호 서식)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할 항목이 한국건축규정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간의 서로 다르므로 한국건축규정에 맞춰 확인하도록 함
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개선(별지 제24호 서식)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위원회 [] 심의

건축위원회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기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m²	건축면적	m²			
연면적	m²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m²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²		대 m²		대 m²			
	기계식	대 m²		대 m²		대 m²		대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허가사항 변경	[]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m²		m²	
건폐율		연면적 합계	
%		m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용적률	
m²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부속 건축물	
	동	동	m³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총 주차대수
	호	호	대
	가구	가구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m²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m³)		
		지하		개		(m³)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²	대	m²	대	m²	대
	기계식	대	m²	대	m²	대	m²	
	전기차	대	m²	대	m²	대	m²	
공개 공지 면적		조경 면적		건축선 후퇴 면적		건축선 후퇴 거리		
m²		m²		m²		m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공고명	공고번호	공고일자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사도개설허가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점용허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준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제16조·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II.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철근콘트리트조 [] 철골조 [] 기타				주구조		[] 철근콘트리트조 [] 철골조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m ²)					
				※ 연면적(m ²)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 ²)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건축법 시행령」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제2조제18호)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III.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m ²)	층구분	건축구분	⑯ 구조	⑰ 용도	⑱ 면적(m ²)

IV.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m²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건축물의 외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m²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①9 유형	②0 실/호/세대수	②1 실/호/세대별 면적(m²)	②2 유형	②3 실/호/세대수	②4 실/호/세대별 면적(m²)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②5 호(가구)별 전용면적(m²)	호(가구) 구분	층구분	②6 호(가구)별 전용면적(m²)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意的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일~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

작성방법

-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 : 101동, A동 등)
- ⑧・⑨・⑩・⑪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 ⑫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 ⑬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 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8. 기타

- ⑮・⑯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 ⑰・⑱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 ⑲ ~ ㉔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를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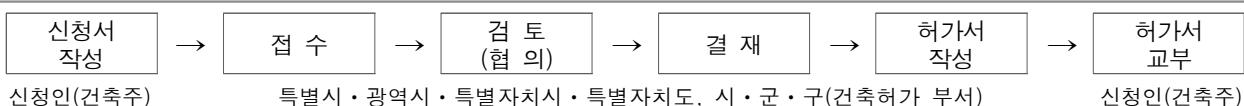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 ⑳・㉑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허가(신고)번호				
대지위치				

① 건축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② 설계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설계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③ 공사감리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자격번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감리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④ 공사시공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명		
회사명	(면허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시공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2.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 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최초 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 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남은 계약금액은 변경 후 관계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신고사항 변경 [] 용도변경
------	--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대지면적	m²	건축면적	m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m²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m²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m²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m³)		
		지하		개		(m³)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²	대	m²	대	m²	대
	기계식	대	m²	대	m²	대	m²	
	전기차	대	m²	대	m²	대	m²	
공개 공지 면적		조경 면적		건축선 후퇴 면적		건축선 후퇴 거리		
m²		m²		m²		m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공고명		공고번호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일괄처리 사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사도개설허가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점용허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 「건축법」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6조 제1항·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II.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철근콘트리트조 [] 철골조 [] 기타				주구조		[] 철근콘트리트조 [] 철골조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마감재료					
				※ 건축면적(m ²)					
				※ 연면적(m ²)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 ²)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건축법 시행령」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제2조제18호)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III.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m ²)	층구분	건축구분	⑯ 구조	⑰ 용도	⑱ 면적(m ²)

IV.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m ²]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개]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개]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개]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건축물의 외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m ²]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①9 유형	②0 실/호/세대수	②1 실/호/세대별 면적(m ²)	②2 유형	②3 실/호/세대수	②4 실/호/세대별 면적(m ²)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②5 호(가구)별 전용면적(m ²)	호(가구) 구분	층구분	②6 호(가구)별 전용면적(m ²)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척	/
------	----	---

도면종류	축척	/
------	----	---

작성방법

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 방위, 나. 축척, 다. 대지경계선, 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마.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20 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6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

제14조·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80조·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④ :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 : 101동, A동 등)
- ⑧·⑨·⑩·⑪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 ⑩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를 적습니다.
- ⑪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타, 기타)를 적습니다.
-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임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먼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8. 기타

- ⑬·⑭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 ⑮·⑯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 ⑰ ~ ⑳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를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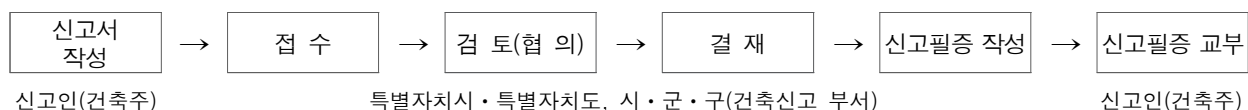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준주택(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	30

- ㉕·㉖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착공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	------	------	------	-----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①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 없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의 지도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건축주)	→	접 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주소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호의 서류(등 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②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 전체 개요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로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 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		㎡	
건폐율		연면적 합계	
%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용적률	
㎡		%	
③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부속 건축물	동, ㎡
④ 주용도	세대/호/가구 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⑤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
	지하	개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전기차	대	m ²	대	m ²	대	m ²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조경 면적		건축선 후퇴 면적		건축선 후퇴 거리			
	m ²	m ²	m ²		m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G.L	m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지내력기초인 경우)		t/m ²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공고명		
						공고번호		
						공고일자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 합계(m ²)		

II.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⑥ 동 고유번호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 ⑩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⑪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m ²)		
		※ 연면적(m ²)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 ²)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동 명칭 및 번호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24 –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⑱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㉓소유자 성명(명칭)	㉔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V. 공동주택 총괄

- ㉔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 입주방식	[] 분양 [] 기타	[] 임대	[] 혼합
평면형식	[] 계단실형	[] 복도형	
난방방식	[] 중앙 집중공급방식 [] 지역난방	[] 개별 기름보일러 [] 기타	[] 개별 가스보일러
취사용 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㉔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m ²)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 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 설 종 류	설 치 현 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27 –

VII.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㉔ 구분기호

㉔ 전유/공용	㉕ 주/부	※ ㉖ 층구분	㉗ 구조	㉘ 용도	㉙ 면적(㎡)

※ ㉔ 구분기호

㉔ 전유/공용	㉕ 주/부	※ ㉖ 층구분	㉗ 구조	㉘ 용도	㉙ 면적(㎡)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㉚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㉚ 호(가구)별 전용면적(㎡)

첨부서류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허가권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11조 제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작성방법

-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면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면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③ ~ ⑤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⑥ : 동·고유번호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⑦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⑧ ~ 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 ⑩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⑪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최대지반가속도”를 적습니다.
-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 | |
|---------------------------------|---|
|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FB)인 건축물 |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
|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
|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8. 기타 |

9. ⑬ ~ ⑯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 ⑰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⑱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 ㉑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 ㉒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㉓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㉔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 ㉕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청인(건축주)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건 축 공 사 개 요	건축공사명				건축물용도					
	현장소재지									
	건축허가일				착공예정일자					
	건축허가번호				준공예정일자					
	사업개요		(총 공사비)	원	층수(최저/최고)		지하	층 / 지상	층	
	연면적 합계			m ²	동수			동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시공사		(회사명)				(전화번호)			
설계자		(건축사사무소명)		(건축사명)		(전화번호)				
공 사 감 리 개 요	감리구분		[] 상주감리 [] 상주감리 이외 [] 허가권자 지정 [] 건축주 지정							
	공사감리 건축공사 종류		[] 다중이용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고층건축물 [] 기타 건축공사							
	해당되는 경우 기재		[] 10m 이상 굴착공사 및 5m 이상 옹벽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 마감재료 설치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구조 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철골조 [] 기타 구조							
	감리자 (건축사)		(건축사 명)		(건축사 자격번호)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기간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기간						
배 치 확 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소속회사 (사업자번호)	배치(예정)기간 (일자까지 기재)	자격구분			근무 형태	이중배치 여부 등 확인
						건축사보 (신고자격)	기술계자격 (자격종목)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등급)		
	건축				~	([])	([])	([])	[] 상주 [] 기술 지원	[]
	토목				~	([])	([])	([])	[] 상주 [] 기술 지원	[]
	기계				~	([])	([])	([])	[] 상주 [] 기술 지원	[]
	안전				~	([])	([])	([])	[] 상주 [] 기술 지원	[]
전기				~	([])	([])	([])	[] 상주 [] 기술 지원	[]	

철수 확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철수일	배치기간	철수내용		철수 사유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 변경 [] 정정	분야	성명	생년월일	변경일	변경(정정) 항목	변경(정정)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1.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2.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요령

1. '건축공사 개요'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 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2. '총 공사비'는 전기·소방·통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자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전기·소방·통신 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하고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공정의 공사비를 적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소방 감리원에 대한 배치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 이에 해당되는 감리원은 이 서식에 건축사보로 적지 않습니다.
3. 이 서식에 적어야 하는 "기간"이나 "일자" 등은 반드시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감리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에 √ 표시를 하고, 그 외의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 이외"에 √ 표시를 하며, 허가권자 지정감리 또는 건축주 지정감리 여부를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5. '감리자'는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정보를 기재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6. '배치확인'에는 건축사보 배치계획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정별로 배치되는 분야별 건축사보 현황을 모두 적습니다. '분야별 건축사보'란 건축, 토목, 기계 등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건설기술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시공, 설계, 감리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7. '소속회사'는 분야별 건축사보가 실제 소속된 회사명(사업자번호 포함)을 적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상주하는 건축분야 건축사보는 공사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그 외의 건축사보는 공사감리자 소속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8. '자격구분'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격구분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가. 건축사보 "신고자격": 「건축사법」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실무수련자',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기술자격자', 같은 호 다목의 경우에는 '학경력자'로 적습니다.
 - 나. 기술계자격 "자격종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적습니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등급을 적습니다.
9. '근무형태'는 상주에 √ 표시를 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상주감리원과 기술지원감리원을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10. '철수내용'은 건축사보가 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교체"에 √ 표시를 하고, 계획공정 완료, 퇴직·임대·이민·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철수한 경우에는 "완료"의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11. '변경 및 정정'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사보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 중에 오류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이내
 - 나.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5m 이상 옹벽공사, 마감재료 설치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
 - 다.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
 - 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이내
2. 건축사보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인 건축사를 분야별 건축사보로 배치하면 안됩니다.
 -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 다.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중 건축분야의 시공단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분야별 (전기·소방·통신 분야는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 배치) 건축사보를 배치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별도로 적습니다.
 - 라. 다중이용건축물 이외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야별 건축사보를 배치합니다.
 - 1)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건축 분야 건축사보는 착공 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전체 공사기간 동안 1명 이상을 배치하고 토목, 기계, 전기(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 배치된 경우 제외) 분야 건축사보는 해당 공정 기간 동안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 2) 상주감리 대상 이외의 건축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공사)
 - 가)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5m 이상 옹벽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건축사보를 1명 이상 배치합니다.
 - 나) 마감재료 설치공사[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또는 안전분야 건축사보를 1명 이상 배치합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공사 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층 수	지하 지상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축연면적		구 조	
	용 도		건축허가일 /허가번호	

③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④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제외를 신청합니다.

건축주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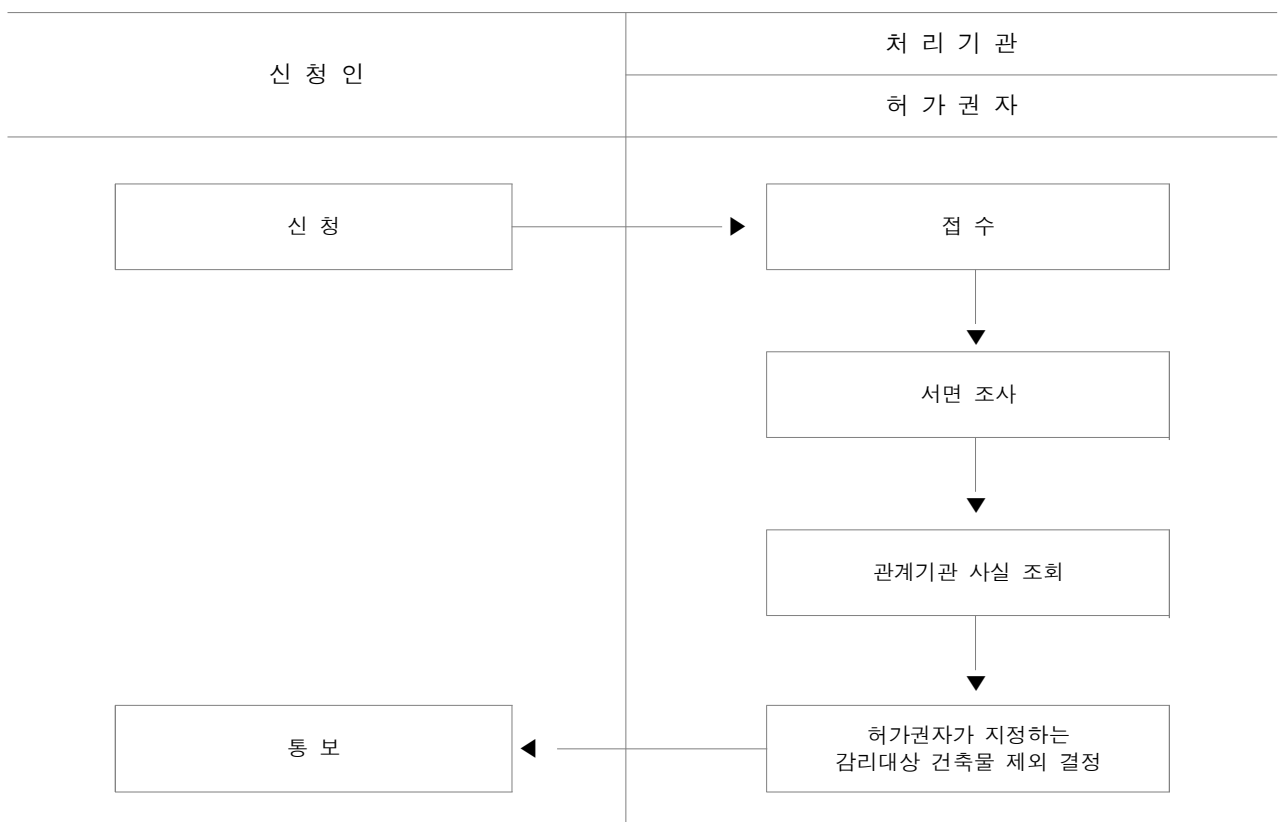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 /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조사 / 검사일자		설계일자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0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41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조례 ()% 이상	()% []해당 없음
		건축선 지정	「건축법」 제46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옥상광장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층간 바닥 구조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	「건축법」 제50조의2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법」 제50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건축법」 제52조의4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실내건축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건축법」 제52조의2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범죄예방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군계획조례 ()% 이하	()%
		건축물의 용적률	도시·군계획조례 ()% 이하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급수시설	「건축법」 제6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공개 공지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조례()% 이상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전유부 표시확인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동별 표시확인	집합건축물의 동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붙임 7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붙임 8과 같음)
[별지 제1호의4서식] (붙임 1과 같음)	[별지 제1호의4서식] (붙임 2와 같음)
[별지 제4호서식] (붙임 9와 같음)	[별지 제4호서식] (붙임 10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붙임 3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붙임 4와 같음)
[별지 제13호서식] (붙임 11과 같음)	[별지 제13호서식] (붙임 12와 같음)
[별지 제17호서식] (붙임 5와 같음)	[별지 제17호서식] (붙임 6과 같음)
[별지 제22호의2서식] (붙임 13과 같음)	[별지 제22호의2서식] (붙임 14와 같음)
[별지 제22호의5서식] (붙임 15와 같음)	[별지 제22호의5서식] (붙임 16과 같음)
[별지 제23호서식] (붙임 17과 같음)	[별지 제23호서식] (붙임 18과 같음)
[별지 제24호서식] (붙임 19와 같음)	[별지 제24호서식] (붙임 20과 같음)

(붙임 1. 별지 제1호의4서식(현행))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허가사항 변경	[]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1. 전체 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m²		m²	
건폐율		연면적 합계	
%		m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용적률	
m²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부속 건축물	
	동	동	m²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m²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m²	대	m²	대	m²	옥내: 대	대	대	
	기계식	대	m²	대	m²	대	m²	옥외: 대	대		
공개 공지 면적		조경 면적		건축선 후퇴 면적		건축선 후퇴 거리					
m²		m²		m²		m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

일괄처리 사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신고,	[]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사도개설허가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점용허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준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제16조·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m ²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건축물의 외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m ²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①9 유형	②0 실/호/세대수	②1 실/호/세대별 면적(m ²)	②2 유형	②3 실/호/세대수	②4 실/호/세대별 면적(m ²)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②5 호(가구)별 전용면적(m ²)	호(가구) 구분	층구분	②6 호(가구)별 전용면적(m ²)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사항 변경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意的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일~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작성방법

-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 : 101동, A동 등)
- ⑧・⑨・⑩・⑪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 ⑫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 ⑬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 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층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전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8. 기타						

- ⑮・⑯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 ⑰・⑱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 ⑲ ~ ㉔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를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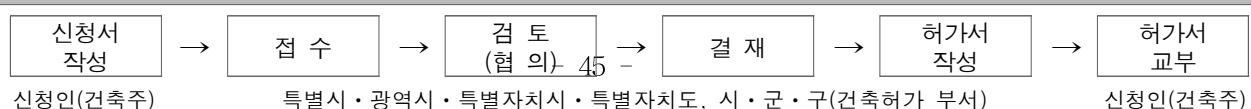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 ㉕・㉖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붙임 2. 별지 제1호의4서식(개정안))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허가사항 변경	[]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1. 전체 개요

대지면적	m²	건축면적	m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m²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부속 건축물	m²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m²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m³)		
		지하		개		(m³)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대
	자주식	대	m²	대	m²	대	m²	
	기계식	대	m²	대	m²	대	m²	
	전기차	대	m²	대	m²	대	m²	
공개 공지 면적 m²		조경 면적 m²		건축선 후퇴 면적 m²		건축선 후퇴 거리 m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공고명	공고번호	공고일자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사도개설허가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점용허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준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제16조·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II.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철근콘트리트조 [] 철골조 [] 기타				주구조	[] 철근콘트리트조 [] 철골조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 • 차양길이:		m		특수구조 건축물	보 • 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건축법 시행령」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제2조제18호)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III.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⑯ 구조	⑰ 용도	⑱ 면적(㎡)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m ²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건축물의 외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m ²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①9 유형	②0 실/호/세대수	②1 실/호/세대별 면적(m ²)	②2 유형	②3 실/호/세대수	②4 실/호/세대별 면적(m ²)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②5 호(가구)별 전용면적(m ²)	호(가구) 구분	층구분	②6 호(가구)별 전용면적(m ²)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사항 변경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意的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일~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작성방법

-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 : 101동, A동 등)
- ⑧・⑨・⑩・⑪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 ⑫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 ⑬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 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층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전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8. 기타						

- ⑮・⑯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 ⑰・⑱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 ⑲ ~ ㉔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를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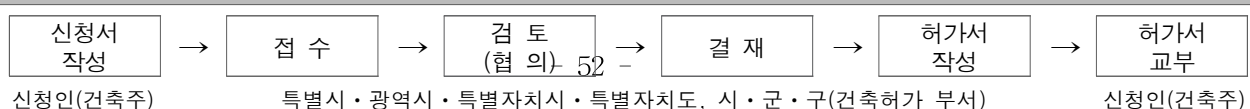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 ㉕・㉖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붙임 3. 별지 제6호서식(현행))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신고사항 변경 [] 용도변경
------	--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1. 전체 개요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 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m ²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 건축물 수	부속 건축물	m ²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인용) 면제	
주차장	구분										
	자주식	대	m²	대	m²	대	m²	옥내: 대	대	대	
기계식	대	m²	대	m²	대	m²	옥외: 대	대			
공개 공지 면적		조경 면적		건축선 후퇴 면적		건축선 후퇴 거리					
m²		m²		m²		m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일괄처리 사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사도개설허가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점용허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 「건축법」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6조 제1항·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IV.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해체·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내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m ²
	[] 기둥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보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지붕틀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방화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방화구획	증설·해체·수선·변경	
	[] 주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건축물의 외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m ²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①9 유형	②0 실/호/세대수	②1 실/호/세대별 면적(m ²)	②2 유형	②3 실/호/세대수	②4 실/호/세대별 면적(m ²)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②5 호(가구)별 전용면적(m ²)	호(가구) 구분	층구분	②6 호(가구)별 전용면적(m ²)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척	/
------	----	---

도면종류	축척	/
------	----	---

작성방법

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 방위, 나. 축척, 다. 대지경계선, 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마.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20 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6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			
제14조·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80조·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④ :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 : 101동, A동 등)
- ⑧·⑨·⑩·⑪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 ⑩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F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를 적습니다
- ⑪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타, 기타)를 적습니다.
-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FB)인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임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8. 기타

- ⑬·⑭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 ⑮·⑯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 ⑰ ~ ⑳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를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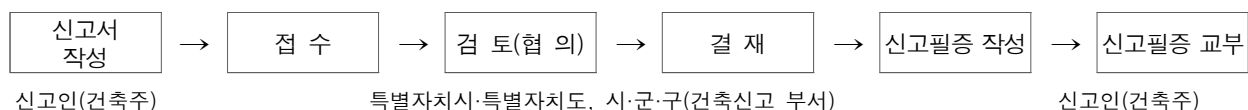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준주택(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	30

- ㉕·㉖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붙임 4. 별지 제6호서식(개정안))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 .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신고사항 변경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총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총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대지면적 m²		건축면적 m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m²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m²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m²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			
		지하		개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조경 면적		건축선 후퇴 면적		건축선 후퇴 거리			
㎡		㎡		㎡		m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공고명		공고번호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일괄처리 사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사도개설허가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점용허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 「건축법」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6조 제1항·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II.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철근콘트리트조 [] 철골조 [] 기타				주구조		[] 철근콘트리트조 [] 철골조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마감재료					
				※ 건축면적(m ²)					
				※ 연면적(m ²)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 ²)					
지하:		총		지상:		총		총	
				총수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건축법 시행령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제2조제18호)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III.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m ²)	층구분	건축구분	⑯ 구조	⑰ 용도	⑱ 면적(m ²)

IV.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m ²]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개]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개]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개]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건축물의 외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m ²]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①9 유형	②0 실/호/세대수	②1 실/호/세대별 면적(m ²)	②2 유형	②3 실/호/세대수	②4 실/호/세대별 면적(m ²)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②5 호(가구)별 전용면적(m ²)	호(가구) 구분	층구분	②6 호(가구)별 전용면적(m ²)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척	/
------	----	---

도면종류	축척	/
------	----	---

작성방법		
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 방위, 나. 축척, 다. 대지경계선, 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마.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20 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6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	
제14조·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80조·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④ :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 : 101동, A동 등)
- ⑧・⑨・⑳・㉓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 ⑩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를 적습니다
- ⑪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타, 기타)를 적습니다.
-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임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먼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8. 기타						

- ⑬・㉔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 ㉑・㉔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 ⑬ ~ ㉔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를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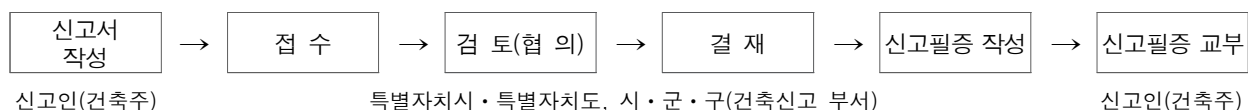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준주택(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	30

- ㉕・㉖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m²	대	m²	대	m²	옥내: 대	대	
	기계식	대	m²	대	m²	대	m²	옥외: 대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조경 면적		건축선 후퇴 면적		건축선 후퇴 거리				
m²		m²		m²		m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G.L. m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지내력기초인 경우) t/m²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 합계(m²)		

II.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⑥ 동 고유번호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 ⑩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⑪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m²)		
		※ 연면적(m²)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²)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동 명칭 및 번호 (㉞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70 –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⑱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㉔소유자 성명(명칭)	㉕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V. 공동주택 총괄

• ㉔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 입주방식	☐ 분양 ☐ 임대 ☐ 혼합 ☐ 기타		
평면형식	☐ 계단실형 ☐ 복도형		
난방방식	☐ 중앙 집중공급방식 ☐ 개별 기름보일러 ☐ 개별 가스보일러 ☐ 지역난방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㉔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m ²)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 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 설 종 류	설 치 현 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9)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24) 층구분	(25) 호구분	(20) 소유자 성명(명칭)	(21) 소유권 지분	※ (26)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VII.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㉔ 구분기호

㉔ 전유/공용	㉕ 주/부	※ ㉖ 층구분	㉗ 구조	㉘ 용도	㉙ 면적(㎡)

※ ㉔ 구분기호

㉔ 전유/공용	㉕ 주/부	※ ㉖ 층구분	㉗ 구조	㉘ 용도	㉙ 면적(㎡)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㉚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㉚ 호(가구)별 전용면적(㎡)

첨부서류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허가권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11조 제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작성방법

-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③ ~ ⑤ :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⑥ : 동 고유번호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⑦ :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⑧·⑨ :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 ⑩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⑪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최대지반가속도”를 적습니다.
-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 | |
|---------------------------------|---|
|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합판강구조(PFB)인 건축물 |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
|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
|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8. 기타 |

9. ⑬ ~ ⑮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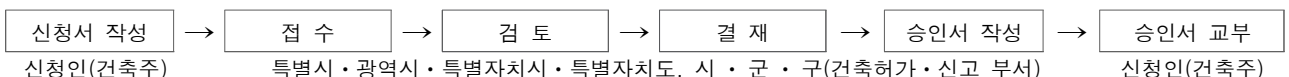
기존 건축물 증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증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증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증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 ⑯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⑰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 ⑱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 ⑳ : 전유/공유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㉑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㉒·㉓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²	대	m²	대	m²	
	기계식	대	m²	대	m²	대	m²	
	전기차	대	m²	대	m²	대	m²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m²	조경 면적		건축선 후퇴 면적		건축선 후퇴 거리		
	m²	m²		m²		m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 (지내력기초인 경우) t/m²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공고명		공고번호
								공고일자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 합계(m²)		

II.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⑥ 동 고유번호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 ⑩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⑪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m²)		
		※ 연면적(m²)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²)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동 명칭 및 번호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78 –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⑱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㉔소유자 성명(명칭)	㉕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V. 공동주택 총괄

- ㉔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 입주방식	[] 분양 [] 기타	[] 임대	[] 혼합
평면형식	[] 계단실형	[] 복도형	
난방방식	[] 중앙 집중공급방식 [] 지역난방	[] 개별 기름보일러 [] 기타	[] 개별 가스보일러
취사용 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㉔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m²)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 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 설 종 류	설 치 현 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81 –

VII.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㉔ 구분기호

㉔ 전유/공용	㉕ 주/부	※ ㉖ 층구분	㉗ 구조	㉘ 용도	㉙ 면적(㎡)

※ ㉔ 구분기호

㉔ 전유/공용	㉕ 주/부	※ ㉖ 층구분	㉗ 구조	㉘ 용도	㉙ 면적(㎡)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㉚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㉚ 호(가구)별 전용면적(㎡)

첨부서류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허가권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11조 제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작성방법

-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③ ~ ⑤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⑥ : 동·고유번호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⑦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⑧ ~ 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 ⑩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⑪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최대지반가속도”를 적습니다.
-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FB)인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8. 기타

9. ⑬ ~ ⑯

작성예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예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 ⑰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⑱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 ㉑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 ㉒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㉓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㉔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 ㉕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청인(건축주)			

(붙임 7)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11.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 심의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기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 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m ²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대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붙임 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 .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 심의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기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 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m²			건축면적	m²			
연면적	m²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m²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²	대 m²	대 m²	대 m²			
	기계식	대 m²	대 m²	대 m²	대 m²	대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붙임 9. 별지 제4호서식(현행))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	------	------	------	---

신청구분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허가(신고)번호				
대지위치				

① 건축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② 설계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설계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③ 공사감리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자격번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감리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④ 공사시공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명		
회사명	(면허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시공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2.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 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최초 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 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남은 계약금액은 변경 후 관계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			

(붙임 10. 별지 제4호서식(개정안))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 .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허가(신고)번호				
대지위치				

① 건축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② 설계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설계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③ 공사감리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자격번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감리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④ 공사시공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명		
회사명	(면허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시공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2.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 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최초 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 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남은 계약금액은 변경 후 관계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			

(붙임 11. 별지 제13호서식(현행))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①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 없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대상 ☐ 비대상		
의 지도대상 여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붙임 12. 별지 제13호서식(개정안))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 .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①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 없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의 지도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건축주)	→	접 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붙임 13. 별지 제22호의2서식(현행))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건 축 공 사 개 요	건축공사명				건축물용도					
	현장소재지									
	건축허가일				착공예정일자					
	건축허가번호				준공예정일자					
	사업개요		(총 공사비)	원	층수(최저/최고)		지하	층 / 지상	층	
	연면적 합계			m ²	동수			동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시공사		(회사명)		(전화번호)					
	설계자		(건축사사무소명)		(건축사명)		(전화번호)			
공 사 감 리 개 요	감리구분		[] 상주감리 [] 상주감리 이외 [] 허가권자 지정 [] 건축주 지정							
	공사감리 건축공사 종류		[] 다중이용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고층건축물 [] 기타 건축공사							
			해당되는 경우 기재		[] 10m 이상 굴착공사 및 5m 이상 옹벽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 마감재료 설치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구조 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철골조 [] 기타 구조					
	감리자 (건축사)		(건축사 명) (건축사사무소 명)		(대표자)		(건축사 자격번호)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기간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기간				
배 치 확 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소속회사 (사업자번호)	배치(예정)기간 (일자까지 기재)	자격구분			근무 형태	이중배치 여부 등 확인
						건축사보 (신고자격)	기술계자격 (자격종목)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등급)		
	건축				~	([]) ([])	([]) ([])	([]) ([])	[] 상주 [] 기술 지원	[]
	토목				~	([]) ([])	([]) ([])	([]) ([])	[] 상주 [] 기술 지원	[]
	기계				~	([]) ([])	([]) ([])	([]) ([])	[] 상주 [] 기술 지원	[]
	안전				~	([]) ([])	([]) ([])	([]) ([])	[] 상주 [] 기술 지원	[]
전기				~	([]) ([])	([]) ([])	([]) ([])	[] 상주 [] 기술 지원	[]	

철수 확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철수일	배치기간	철수내용		철수 사유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 변경 [] 정정	분야	성명	생년월일	변경일	변경(정정) 항목	변경(정정)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1.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2.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요령

1. '건축공사 개요'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 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2. '총 공사비'는 전기·소방·통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자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전기·소방·통신 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하고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공정의 공사비를 적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소방 감리원에 대한 배치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 이에 해당되는 감리원은 이 서식에 건축사보로 적지 않습니다.
3. 이 서식에 적어야 하는 "기간"이나 "일자" 등은 반드시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감리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에 √ 표시를 하고, 그 외의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 이외"에 √ 표시를 하며, 허가권자 지정감리 또는 건축주 지정감리 여부를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5. '감리자'는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정보를 기재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6. '배치확인'에는 건축사보 배치계획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정별로 배치되는 분야별 건축사보 현황을 모두 적습니다. '분야별 건축사보'란 건축, 토목, 기계 등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건설기술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시공, 설계, 감리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7. '소속회사'는 분야별 건축사보가 실제 소속된 회사명(사업자번호 포함)을 적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상주하는 건축분야 건축사보는 공사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그 외의 건축사보는 공사감리자 소속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8. '자격구분'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격구분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가. 건축사보 "신고자격": 「건축사법」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실무수련자',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기술자격자', 같은 호 다목의 경우에는 '학경력자'로 적습니다.
 - 나. 기술계자격 "자격종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적습니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등급을 적습니다.
9. '근무형태'는 상주에 √ 표시를 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상주감리원과 기술지원감리원을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10. '철수내용'은 건축사보가 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교체"에 √ 표시를 하고, 계획공정 완료, 퇴직·임대·이민·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철수한 경우에는 "완료"의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11. '변경 및 정정'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사보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 중에 오류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이내
 - 나.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5m 이상 옹벽공사, 마감재료 설치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
 - 다.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
 - 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이내
2. 건축사보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인 건축사를 분야별 건축사보로 배치하면 안됩니다.
 -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 다.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중 건축분야의 시공단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분야별 (전기·소방·통신 분야는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 배치) 건축사보를 배치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별도로 적습니다.
 - 라. 다중이용건축물 이외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야별 건축사보를 배치합니다.
 - 1)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건축 분야 건축사보는 착공 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전체 공사기간 동안 1명 이상을 배치하고 토목, 기계, 전기(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 배치된 경우 제외) 분야 건축사보는 해당 공정 기간 동안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 2) 상주감리 대상 이외의 건축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공사)
 - 가)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5m 이상 옹벽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건축사보를 1명 이상 배치합니다.
 - 나) 마감재료 설치공사[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또는 안전분야 건축사보를 1명 이상 배치합니다.

(붙임 14. 별지 제22호의2서식(개정안))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건 축 공 사 개 요	건축공사명				건축물용도					
	현장소재지									
	건축허가일				착공예정일자					
	건축허가번호				준공예정일자					
	사업개요		(총 공사비)	원	층수(최저/최고)		지하	층 / 지상	층	
	연면적 합계				m ²	동수		동		
	건 축 주		(성명)		(전화번호)					
	시 공 자		(회사명)		(전화번호)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명)		(건축사명)		(전화번호)			
공 사 감 리 개 요	감리구분		[] 상주감리 [] 상주감리 이외 [] 허가권자 지정 [] 건축주 지정							
	공사감리 건축공사 종류		[] 다중이용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고층건축물 [] 기타 건축공사							
			해당되는 경우 기재		[] 10m 이상 굴착공사 및 5m 이상 옹벽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 마감재료 설치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구조 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철골조 [] 기타 구조					
	감리자 (건축사)		(건축사 명)		(건축사 자격번호)					
			(건축사사무소 명)		(대표자)		(협회 회원번호) (전화번호)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명)		(대표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기간				
배 치 확 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소속회사 (사업자번호)	배치(예정)기간 (일자까지 기재)	자격구분			근무 형태	이중배치 여부 등 확인
						건축사보 (신고자격)	기술계자격 (자격종목)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등급)		
	건축				~	([]) ([])	([]) ([])	([]) ([])	[] 상주 [] 기술 지원	[]
	토목				~	([]) ([])	([]) ([])	([]) ([])	[] 상주 [] 기술 지원	[]
	기계				~	([]) ([])	([]) ([])	([]) ([])	[] 상주 [] 기술 지원	[]
	안전				~	([]) ([])	([]) ([])	([]) ([])	[] 상주 [] 기술 지원	[]
전기				~	([]) ([])	([]) ([])	([]) ([])	[] 상주 [] 기술 지원	[]	

철수 확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철수일	배치기간	철수내용		철수 사유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	공정완료 [], 공사중단 [], 퇴직·임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 변경 [] 정정	분야	성명	생년월일	변경일	변경(정정) 항목	변경(정정)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교체 [], 기간 [], 자격 [], 근무형태 [], 소속회사 [], 기타 []	당초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1.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2.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요령

1. '건축공사 개요'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 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2. '총 공사비'는 전기·소방·통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자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전기·소방·통신 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하고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공정의 공사비를 적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소방 감리원에 대한 배치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 이에 해당되는 감리원은 이 서식에 건축사보로 적지 않습니다.
3. 이 서식에 적어야 하는 "기간"이나 "일자" 등은 반드시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감리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에 √ 표시를 하고, 그 외의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 이외"에 √ 표시를 하며, 허가권자 지정감리 또는 건축주 지정감리 여부를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5. '감리자'는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정보를 기재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6. '배치확인'에는 건축사보 배치계획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정별로 배치되는 분야별 건축사보 현황을 모두 적습니다. '분야별 건축사보'란 건축, 토목, 기계 등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건설기술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시공, 설계, 감리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7. '소속회사'는 분야별 건축사보가 실제 소속된 회사명(사업자번호 포함)을 적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상주하는 건축분야 건축사보는 공사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그 외의 건축사보는 공사감리자 소속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8. '자격구분'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격구분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가. 건축사보 "신고자격": 「건축사법」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실무수련자',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기술자격자', 같은 호 다목의 경우에는 '학경력자'로 적습니다.
 - 나. 기술계자격 "자격종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적습니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등급을 적습니다.
9. '근무형태'는 상주에 √ 표시를 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상주감리원과 기술지원감리원을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10. '철수내용'은 건축사보가 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교체"에 √ 표시를 하고, 계획공정 완료, 퇴직·임대·이민·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철수한 경우에는 "완료"의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11. '변경 및 정정'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사보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 중에 오류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이내
 - 나.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5m 이상 옹벽공사, 마감재료 설치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
 - 다.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
 - 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이내
2. 건축사보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인 건축사를 분야별 건축사보로 배치하면 안됩니다.
 -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 다.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중 건축분야의 시공단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분야별 (전기·소방·통신 분야는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 배치) 건축사보를 배치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별도로 적습니다.
 - 라. 다중이용건축물 이외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야별 건축사보를 배치합니다.
 - 1)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건축 분야 건축사보는 착공 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전체 공사기간 동안 1명 이상을 배치하고 토목, 기계, 전기(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 배치된 경우 제외) 분야 건축사보는 해당 공정 기간 동안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 2) 상주감리 대상 이외의 건축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공사)
 - 가)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5m 이상 옹벽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건축사보를 1명 이상 배치합니다.
 - 나) 마감재료 설치공사[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또는 안전분야 건축사보를 1명 이상 배치합니다.

(붙임 15. 별지 제22호의5서식(현행))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공사 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층 수	지하 지상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축연면적		구 조	
	용 도		건축허가일 /허가번호	

③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④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제외를 신청합니다.

건축주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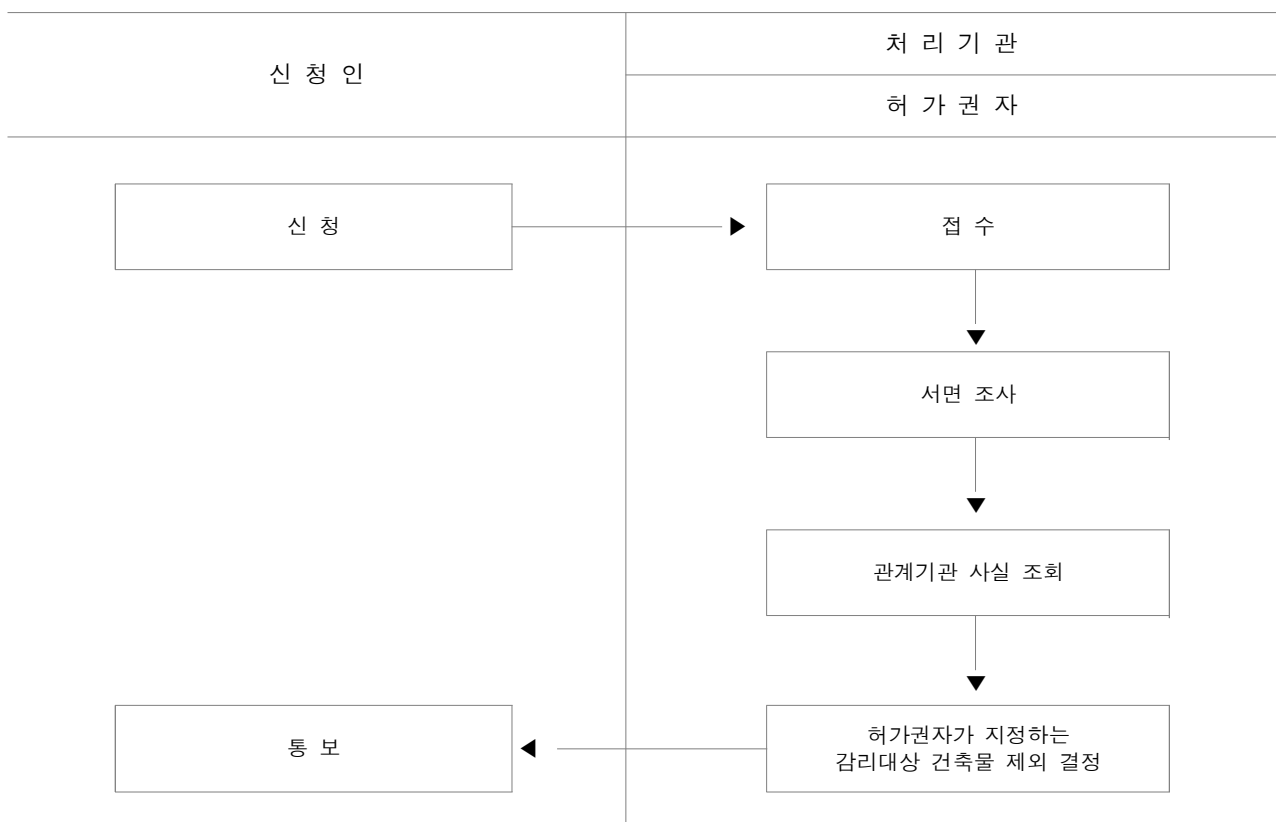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붙임 16. 별지 제22호의5서식(현행))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	------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공사 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층 수	지하 지상
	대지면적	m²	건축면적	m²
	건축연면적		구 조	
	용 도		건축허가일 /허가번호	

③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④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제외를 신청합니다.

건축주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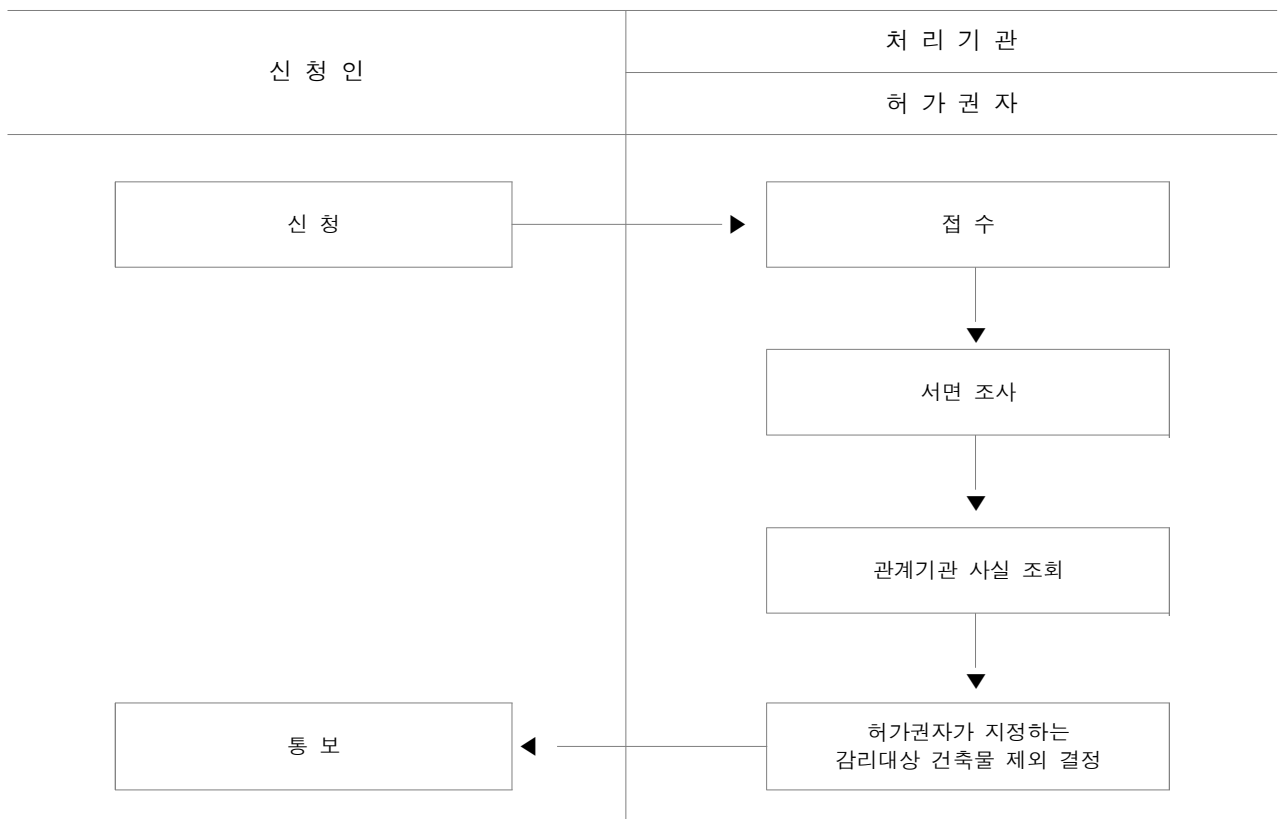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구분		검토내용	관련규정	검토결과
설계 도서 검토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조례 ()% 이상	()% []해당 없음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구조	구조내력	「건축법」 제48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옥상광장 등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층간 바닥 구조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건축법」 제50조의2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법」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1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실내건축의 구조 및 재료	「건축법」 제52조의2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군계획조례 ()% 이하	[]적합 []부적합 ()%
		건축물의 용적률	도시·군계획조례 ()% 이하	[]적합 []부적합 ()%
	대지 안 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구분		검토내용	관련규정	검토결과
설계 도서 검토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급수설비	「건축법」 제62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4조까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공개 공지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조례()% 이상	()% []해당 없음
	범죄예방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건축법」 제52조의4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실내건축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건축법」 제52조의2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범죄예방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군계획조례 ()% 이하	()%
		건축물의 용적률	도시·군계획조례 ()% 이하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급수시설	「건축법」 제6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공개 공지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조례()% 이상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전유부 표시확인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붙임 20. 별지 제24호서식(개정안))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3. . .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조사/검사일자		설계일자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0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41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조례 ()% 이상	()% []해당 없음
		건축선 지정	「건축법」 제46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옥상광장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층간 바닥 구조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	「건축법」 제50조의2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법」 제50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건축법」 제52조의4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실내건축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건축법」 제52조의2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범죄예방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군계획조례 ()% 이하	()%
		건축물의 용적률	도시·군계획조례 ()% 이하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급수시설	「건축법」 제6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공개 공지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조례()% 이상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전유부 표시확인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동별 표시확인	집합건축물의 동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